

## 북한의 최근 법제 동향과 전망: 미국의 두 여기자 사건을 계기로

장명봉 (북한법연구회장)

미국 TV방송의 두 여기자가 2009년 3월 북한-중국 접경지대에서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다가 북한군에 체포돼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북한의 법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상당한 수준의 지식인들조차 “북한에도 법이 있는가?”라고 묻는 경우가 간혹 있다. 오랫동안 북한법을 연구해온 필자로서는 당혹스러운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또 우리가 북한에 대해 그만큼 잘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법치국가로 되어야 강성대국 건설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법제정 사업은 법치의 선결조건인 만큼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법체계부터 완비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근래에 들어 북한은 많은 법령을 제정하고 법전도 편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200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을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발간해 공개한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는 북한의 정책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법전에는 2000년대에 들어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입법들도 많이 눈에 띈다.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론은 ‘당적 령도하’의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론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정치, 행정 할 것없이 모두가 법률에 근거하는 세계적 스탠더드의 법치개념과는 물론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앞으로 북한에서도 점차 법에 의한 통치로의 변화가 기대된다.

북한의 최근 입법동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폐쇄에서 개방으로의 실용주의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근자에 제정 또는 개정된 북한의 법률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줄어들고 대신에 객관적 사회규범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기대됨으로써 북한사회에서도 앞으로 교시에 의한 통치로부터 법에 의한 통치로의 변화가 촉진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법제정비와 입법동향에 비추어 향후 북한의 통치시스템은 ‘교시’가 ‘당정책화’하고 그것이 ‘법화’하는 메커니즘, 즉 “교시→당정책화→법화”로 작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

## 목 차

1. “북한에도 법이 있는가?”
2. 「사회주의 법무생활론」과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3. 법전 발간
4. 미국의 두 여기자 사건
5. 개성공단 남측인원 장기 억류 사건
6. 북한의 법제 전망과 과제

### 1. “북한에도 법이 있는가?”

- 미국 「커런트 TV」소속의 두 여기자 ‘로라 링’과 ‘유나 리’가 2009년 3월 두만강 인근 북한-중국 접경지대에서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다가 북한 국경을 넘는 바람에 북한군에 체포돼 억류되면서 큰 파문이 일어났음. 그후 세계 언론의 주목 속에서 두 여기자는 지난 6월 북한 중앙재판소로부터 조선민족 적대죄, 비법국 경출입죄 등의 혐의로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음.
- 국내외를 막론하고 상당한 수준의 지식인들조차 “북한에도 법이 있는가?”라고 묻는 경우가 간혹 있음. 평생에 걸쳐 통일문제와 북한헌법 등을 연구하고 특히 지난 93년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법연구회」를 결성해 나름대로는 꾸준히 연구활동을 해 온 필자로서는 참으로 당혹스러운 질문이 아닐 수 없음. 이러한 질문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 그만큼 잘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함.
- 따라서 여기에서는 북한의 법제 동향을 일별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함. 그런 다음 미국의 두 여기자 문제와 한국의 개성공단 근로자 장기억류 문제를 규범적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북한 법제의 향후 전망을 시도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자 함.

### 2. 「사회주의 법무생활론」과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 김일성이 1977년 12월 15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 회의시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라는 연설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기본내용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시방법 △관료주의와의 투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 법무생활’에 대하여 밝힌 이후, ‘사회주의 법무생활론’은 북한사회에서 법분야의 독특성을 나타내는 이론으로 되었음. ‘사회주의 법무생활’이란 “사회주의 사회에 사는 모든 사회성원들이 법규범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그 요구대로 활동하는 사회생활”이라고 함.

- 김정일도 ‘사회주의 법무생활’의 강화를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위한 이른바 ‘혁명적 준법기풍’의 확립을 역설하였음. 또한 그는 준사법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사회주의 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임무과 기능을 체계화하였음. 북한의 1992년 개정헌법은 ‘사회주의 준법성’을 강조한 조항에서 “국가는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한다”는 규정(제18조 제3항)을 추가 신설하여 이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북한에서는 ‘당의 령도하에’ 사회주의 법치국가로 되어야 강성대국 건설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함. 강성대국 건설은 짜여진 법률제도와 질서를 전제로 하며 그에 의하여 담보된다는 것임. 또 북한에서는 법치를 하여야 경제강국 건설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함. 그것은 법률적 담보밑에서만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강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며 인민경제계획을 법화하여 무조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임.
- 요컨대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국가가 법을 강화하고 법치를 하여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원만히 실현하고 인민들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제도를 지키고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임. 법제정 사업은 법치의 선결조건인 만큼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법체계부터 완비하여야 한다고 함. 이에 따라 근래에 들어 북한은 많은 법령을 제정하고 법전도 편찬해 왔음을 엿볼 수 있음.

### 3. 법전 발간

- 우리나라와 같은 법전을 펴낸 적이 거의 없었던 북한이 이례적으로 200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을 ‘대중용’으로 발간하였음. 북한에서는 법전을 발간하는 경우에도 배포대상에 따라 구성과 내용을 달리하여 출간함. 이를테면, 당간부들을 대상으로 발간하는 경우에는 ‘간부용’이라고 별도 표시를 하고 비공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법체계부터 완비를 강조

**2004년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대중용 법전을  
발간해 공개한 것은  
특기할만**

개로 함. ‘기관내부용’ 또한 비공개임. 2009년 4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뤄진 헌법의 부분개정 내용 역시 비공개로, △국방위원회의 지위강화와 함께 △국방위원장의 종래 국방사업 전반 지도가 국정 전반 지도로 개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만이 우리 사회 일각에서 나돌았음.

- 따라서 수령중심체제인 북한이 2004년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대중용 법전을 발간해 공개한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음. 해방 후 북한에서 법전이 발간된 일이 없었는데, 현실적인 필요성으로 인해 대중용 법전을 발간하였고 게다가 이를 공개한 것 자체가 북한의 정책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이는 개방으로 가는 발걸음을 떼는 신호탄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임.
- 이 대중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에는 2004년 6월 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주의 헌법, 민법과 형법은 물론 ‘금강산관광지구법’과 ‘개성공업지구법’ 등 모두 112개의 법률이 수록되어 있음. 이 법전에는 1990년대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들도 수록되어 있지만,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입법들이 많이 눈에 띈.
- 이를테면 1950년 제정된 북한 형법은 2004년에 전면개정되어 ‘죄형법정주의’를 도입함. 북한의 과거 형법의 경우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비슷한 조항으로부터 유추해석을 하도록 함으로써 ‘인권침해’라는 비난을 받았는데, 이 유추해석 조항이 2004년 개정에서 삭제된 것임. 구체적인 처벌조항을 놓기 위해 형사소송법의 대폭개정도 함께 이루어졌음. 이런 것들이 이번에 발간된 대중용 법전에 모두 수록돼 공개된 것임.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시장경제적 요소를 일부 도입한 북한은, 남한과의 협력을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금강산관광지구법’과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해 법전에 수록하였음.
- 북한은 또 2006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의 증보판을 발간하였음. 여기에는 ‘북남경제협력법’, ‘중앙은행법’

등 제정 또는 수정보충된 47개의 법률을 수록하였음. 여기에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합작법 △합영법 △외국인기업법 △외국인투자법 등이 포함되었음. 또 환경관련법을 정비해 △바다오염방지법 △대동강오염방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도입한 것도 환경의식에 대한 각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임.

- 그 뒤 2006년 이후 2008년 3월까지 새로이 제정된 법률 가운데에는 상업은행법, 외국투자기업등록법, 자금세척방지법 등이 눈길을 끌. 일반적인 예금, 대부, 결제 업무를 담당하는 상업은행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하는 상업은행법이 2006년 1월 제정된 것은, 중앙은행법이 2004년 9월 만들어졌음을 감안할 때, 북한이 금융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정비하는 중임을 의미한다고 하겠음. 즉, 북한은 금융시스템을 2원적으로 운용할 것임을 전망케 함. 그리고 2006년 10월에 제정된 자금세척방지법은 당시 파장이 컸던 BDA(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자금 동결시기에 나온 법임. 이 법에서는 자금세척에 이용될 수 있는 위조 또는 변조한 화폐, 마약, 무기의 밀수·밀매 등으로 얻은 자금이나 재산을 합법적으로 마련한 것처럼 하는 행위를 ‘자금세척’이라고 규정짓고 있음. 어쨌든 북한도 글로벌시대를 맞아 국제사회 기류에 대응하기 위해 점차 시의에 맞춰 법제를 정비하고 있는 셈이라 하겠음.

#### 4. 미국의 두 여기자 사건

- 미국의 두 여기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북한의 형법 제69조(조선민족 적대죄)에 따른 것임. 제69조는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민족을 적대시할 목적으로 해외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 조선 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하였거나 민족적 불화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북한은 해외의 TV방송사 소속의 두 여기자가 탈북자를 만나고 탈북루트를 취재해서 북한체제를 비방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졌다고 보고 민족적 불화를 일으킨 사건으로 판단했음직함. 따라서 조선민족 적대행위를 했기 때문에 제69조를 어겼다고 보고 특히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0년의

북한도 글로벌시대 맞아  
국제사회 기류에  
대응하기 위해 점차  
시의에 맞춰 법제 정비

**미국의 두 여기자  
사건은 미국과의 교섭을  
위해 이용하려는  
정치적 계산 깔아**

노동교화형을 적용한 것으로 보임.

동시에 형법 제233조(비법국경출입죄)의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든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해 2년형을 추가하였음. 따라서 두 여기자는 북한의 중앙재판소에서 위의 두 가지 죄목의 형기를 합산해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것임. 북한의 중앙재판소는 다른 재판소의 관련 사건도 자신의 관할로 할 수가 있고 단심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 상소할 길도 없음. 재판과정에서 한국계 기자인 ‘유나 리’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지만, 중국계의 기자 ‘로라 링’은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함. 하지만 변호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형량이 똑같은 것을 보면 변호사의 역할이 북한에서는 제한돼 우리나라의 경우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편 북한의 법에 따르면 노동교화형은 노동교화소에 수감돼 노동을 해야 함. 하지만, 2009년 7월초에 북한을 다녀온 미국의 조지아주립대의 박한식 교수는 국내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두 여기자는 초대소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한다. 정치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함.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을 방문해 8월 4일 두 여기자와 함께 귀국하는 항공기 트랩에 오름으로써 북한은 미국과의 교섭에 이 사건을 이용하려는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음.

## 5. 개성공단 남측인원 장기역류 사건

- 그동안 남북 간에는 남북교류협력이 개시된 이래 많은 관련 합의서가 만들어졌음. 경협 관련 4대 합의서를 비롯하여 개성공단 통신·통관·검역 관련 합의서와 함께 개성공단과 금강산 출입·체류 합의서도 체결되었음. 이들 합의서들은 소정의 발효절차를 거쳐 발효되었음. 이런 가운데 작년 남측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과 올해 개성공단 남측인원 장기역류사건이 발생한 것임. 이는 그간의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북한 체류 남측인원의 신변안전 보장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음.

- 남북 간 출입·체류 합의서 제10조에는 신변안전보장 조항이 있음. 즉, 개성공업지구에서 북한의 법질서를 위반한 경우 제재 조항을 두고 있는데, 북측에서 조사해서 경미한 경우에는 범칙금 등만 부과해서 남측으로 인도해 남측에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남측에서는 처리 결과를 북측에 통보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엄중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합의된 것이 없음. 단지 “엄중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남과 북이 합의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정한다”로만 되어 있음. 따라서 출입·체류 합의서 체결 이후 남북당국이 만나 머리를 맞대고 ‘엄중한 위반행위’의 개념과 구성요건, 처리방향 등을 정하는 등 그 후속조치를 마련했어야 했음. 이러한 신변안전 보장조치의 부속합의서를 만들지 않은 것은 당국이 그 책임을 다했다고 하기 어려운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라 하겠음.
- 개성공단 사업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음. 그리고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사건이 발생하게 마련임. 따라서 지금이라도 출입·체류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부속합의서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남북이 접촉해야 함. 개성공단에 장기억류된 유모씨의 경우 출입·체류 합의서에 따라서만 처리하겠다는 게 북측의 입장이어서 미결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음. 북측은 아무런 조치없이 무작정 억류하고 있는 것임. 유모씨 신변문제는 우리로서는 더 할 수 없이 중요한 문제이지만 뾰족한 대응수단이 없는 게 문제임. 참으로 답답하다고 할 수밖에 없음. 북한측도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개성공단 사업은 단순한 경협차원을 넘어 평화사업이자 통일사업으로서도 계속되고 이어져야 함. 따라서 북측도 유모씨의 신변을 빨리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것임. 특히 북측은 유모씨 문제를 개성공단에 장애되는 방향으로 처리해서는 결코 안될 것임.
- 남북관계는 제도화의 길을 걸어 규범적 관계로 발전을 하는 게 중요함. 남북 간의 출입·체류합의서는 그 이행이 제도화돼야 함. 따라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들이 조속히 마련되고 남북 관계가 규범적·제도적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임. 그래야만 어떠한 정치적 상황이나 여건의 변화에도 굴곡없이 남북관계가

남북 간 출입·체류

합의서 이행의

제도화위해 부속합의서

조속 마련돼야

교시에 의한 통치에서  
법에 의한 통치로의  
변화가 촉진될 가능성  
엿보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6. 북한의 법제 전망과 과제

- 북한은 수령중심체제이기 때문에 ‘교시’를 가지고 지탱해 온 사회라 하겠음. 과거에는 구체적으로 성문화된 법조문이 없어도 ‘교시’에 따라 인민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온 일종의 신정체제라 할 수 있을 것임. 수령의 교시나 영도자의 말씀을 인민이 따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임. 그러던 것이 90년대에 들어 ‘사회주의 범무생활’과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이 강조되고 법제사업이 강화돼 온 것임.
- 앞으로 북한은 사회주의 법률제도 완비를 위해 법제정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북한도 한편으로는 개혁·개방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국제환경 속에 처해 있고, 경제회생을 위해서도 이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을 것임. 특히 북한은 국제금융시스템에 편입되지 않으면 경제가 굴러갈 수 없다는 것을 BDA 사건때 절감했을 것임. 최근 제정된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이라든지 ‘유기산업법’ 등도 국제추세를 감안한 법이고, ‘민용항공법’을 개정할 것도 항공안전과 관련된 국제적 수준에 맞춘 것임.
-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론은 ‘당적 령도하’의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론임.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정치, 행정할 것없이 모두가 법률에 근거하는 세계적 스탠더드의 법치개념과는 물론 본질적으로 다름. 하지만 앞으로 북한에서도 점차 법에 의한 통치로의 변화가 기대됨.
- 북한의 최근 입법동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폐쇄에서 개방으로의 실용주의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근자에 제정 또는 개정된 북한의 법률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줄어들고 대신에 객관적 사회규범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기대됨으로써 북한사회에서도 앞으로 교시에 의한 통치로부터 법에 의한 통치로의 변화가 촉진될 가능성이 엿보임. 따라서 북한의 법제정

비와 입법동향에 비추어 향후 북한의 통치시스템은 ‘교시’가 ‘당정책화’하고 그것이 ‘법화’하는 메커니즘, 즉 “교시 → 당정책화 → 법화”로 작동될 것으로 전망됨.

- 이제 문제는 북한이 ‘법에 의한 통치’로 갈 수 있도록 남한이 이를 지원해 줘야 한다는 점임. 특히 북한에서의 최근의 법제정비를 우리가 적극 지원해 줄 필요가 있으며, 법제 정비와 관련해 남북협력이 절실하다고 하겠음. 북한의 환경영향평가법과 컴퓨터 관련 법 등에서는 남한의 법률 용어부터 그대로 채용하는 경향마저 눈에 띈. 이러한 남북 간의 법제 지원협력은 통일을 대비하고 법제도적인 통합을 내다보는 긴 안목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음. 북한 또한 이제는 자신의 법을 공개해야 하고, 특정의 법률을 비공개하는 기존의 관행을 바꿔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하겠음.

**북한의 법제정비와  
관련해 남북협력 절실**

## 부록-1 &lt;북한의 증보판법전(2006) 수록 제정 법률(2004.7~2005.12)&gt;

연 번	법 률 명	채 택 일	주 요 내 용(요 지)
1	간석지법	2005.07.20 채택	· 간석지의 조사와 개간 · 간석지의 구조물관리 · 간석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	공무원자격판정법	2005.11.23 채택	· 공무원의 자격평가 · 공무원의 자격판정 대상 · 공무원 자격판정의 기준(①국가의 정책과 해당 부문의 법규 이해, ②해당 부문의 전문지식, ③사업조직 지휘 능력, ④사업실적, ⑤준법기풍, ⑥고상한 도덕품성) · 자격판정 주기 3년 · 자격판정 시험은 필답 또는 구답의 방법 · 자격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기관의 공무원 자격판정위원회 또는 상급기관에 제기
3	국가예산수입법	2005.07.06 채택	· 국가예산 납부자료의 등록 · 국가예산의 납부 및 납부문건의 관리 · 국가예산 수입 관리 · 국가예산 수입항목(①국가기업이득금, ②협동단체이득금, ③감가상각금, ④토지사용료, ⑤사회보험료, ⑥재산 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 ⑦기타 수입금 등
4	기상법	2005.11.09 채택	· 기상관측과 예보 · 기상관측의 방법 · 기상관측자료의 기록 · 기상시설의 관리
5	담배통제법	2005.07.20 채택	· 담배의 생산과 수매 및 공급 · 정해진 상점과 시장에서만 담배판매할 수 있으며, 미성 인에게는 담배판매금지 · 학생은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교육기관은 담배의 해 독성 교육교양사업 강화 · 혁명전적지, 극장, 역대기실 같은 공중집합장소, 사무실, 상점, 려객운수수단, 걸음길과 정류소 등에서는 금연
6	도로교통법	2004.10.06 채택	· 도로교통의 지휘신호와 안전시설물 관리 · 보행자와 차의 우측통행의 원칙 · 운전면허의 관리 및 도로교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연번	법률명	채택일	주요내용(요지)
7	대동강오염방지법 (잠정)	2005.07.19 채택	· 대동강의 보호관리 · 수질과 생태환경 보존
8	북남경제협력법	2005.07.06 채택	· 남북경제협력에서의 제도와 질서 · 북남경제협력의 원칙(①전민족의 이익, ②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보장, ③호상존중, ④유무상통) · 남북경제협력사업의 분쟁해결(협의를 방법으로 해결, 미해결시 남북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해결절차로 해결)
9	소방법	2005.02.24 채택	· 화재방지, 불끄기와 구조 · 소방시설과 기재 관리
10	중앙은행법	2004.09.29 채택	· 중앙은행사업의 내용 · 중앙은행의 기구(중앙은행의 소재지는 평양시) · 화폐유통조직(회계항목과 계산방법의 제정) · 금융사업의 관리
11	화약류취급법	2005.11.09 채택	· 화약류의 생산과 보관 · 화약류의 공급과 운반 · 화약류의 사용(사용허가, 화약류의 수출입)
12	환경영향평가법	2005.11.09 채택	·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과 신청 ·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 ·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조직 · 환경영향평가결정의 집행
13	약초법	2004.12.29 채택	· 약초의 재배와 약초자원의 조성보호 · 약초의 수매 관리 · 약초는 인민들의 병치료와 건강증진에 필요한 귀중한 자연재부 · 마약원료의 약초재배는 국가의 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함
14	유기산업법	2005.11.23 채택	· 유기제품 생산의 표준화, 규격화, 전문화 · 유기제품의 품질인증(제품인증, 관리체계인증, 성원인증 등) · 유기제품의 수출입의 제도와 질서
15	유전자전생물 안전법	2004.12.22 채택	· 유전자재조합기술 · 유전자전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 유전자전생물의 수출입, 관리, 자료보호 · 유전자전생물의 수출입의 금지 또는 제한(①사람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적 이용에 부정적 영향, ②사회, 경제, 문화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유전자전생물)

## 부록-2 &lt;북한의 증보판법전(2006) 수록 개정 법률(2004.7~2005.12)&gt;

연 번	법 률 명	수 정 보 총 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가족법	1990.10.24 채택 2004.12.07 수정보충(2차)	· 리혼판결 확정 3개월까지 효력(제20조)
2	공증법	1995.02.02 채택 2004.12.07 수정보충	· 공증인 교체시 다른 일군이 공증(제30조)
3	공업도안법	1998.06.03 채택 2005.08.02 수정보충(2차)	·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 접수정형 통보(제14조)
4	교육법	1999.07.14 채택 2005.12.13 수정보충	· 교육기관의 급수와 기구정원(제21조)
5	국토계획법	2002.03.27 채택 2004.10.26 수정보충	· 국토건설개발시 부지조사보고서 문건 첨부(제26조)
6	국토환경보호단속법	1998.05.27 채택 2005.12.13 수정보충	· 국토환경보호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책임 부여(제22조)
7	규격법	1997.07.23 채택 2005.09.13 수정보충(2차)	· 생산자와 수요자 합의하여 기술지표 생산(제11조) · 국가규격에 준하여 하위규격 제정(제12조) · 규격적용에 대한 표준 작성(제27조)
8	과학기술법	1988.12.15 채택 2005.12.13 수정보충(3차) ※ 이 법은 2004년 12월 23일 수 정보충된 법률을 폐지하고 전 면개정함.	· 심의위원회를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에 도 설치(제35조) · 국가발명심의회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제 36조)
9	도로법	1997.09.17 채택 2004.12.14 수정보충(3차)	· 고속도로주변 건물 이주 신설(제27조) · 고속도로주변 집집승 등 방목금지(제30조)
10	라선경제무역지대법	1993.01.31 채택 2005.04.19 수정보충(3차)	· ‘중앙무역지도기관’을 ‘중앙경제협조관리 기관’으로 수정(제8,9,14조) · 외국투자신청시 관계기관과 합의요함(제 12조) · 기업창설 승인·부결 결과 통보 신설(제13조)

연 번	법 률 명	수 정 보 총 일	주 요 (개 정) 내 용
11	량정법	1997.02.10 채택 2005.12.13 수정보충(2차)	· 량곡에 대한 손해보상 기준조정(제55조)
12	마약관리법	2003.08.13 채택 2005.05.17 수정보충	· 마약의 수출입 승인 등 인민경제계획에 따라 수행(제50조) · 중앙보건지도기관의 마약수출입승인신청 문건 검토, 승인, 부결(제51조) · 마약의 수출입허가를 수출입승인으로 수정(제64조)
13	무역법	1997.12.10 채택 2004.12.07 수정보충(2차) ※ 이 법은 2004년 12월 7일 수 정보충된 법률을 폐지하고 전면개정함.	· 무역사업에 대한 입법목적 수정(제1조) · 무역회사의 설립조건 수정(제12조) · 무역거래와 분쟁해결 수정(제53조)
14	민사소송법	1976.01.10 채택 2005.10.25 수정보충(4차)	· 분쟁해결의 소송당사자 수정(제6조) · 재판심리날자와 장소 통보자 확대(제89조) · 집행행위시 3일전 통보 수정(제177조)
15	민용항공법	2000.03.23 채택 2005.08.09 수정보충(2차)	· 민용항공보안사업은 민용항공관리기관으로 정함(제72조) · 항공보안사업 명문화(제73조) · 항공보안질서 준수와 항공성원의 안전의 무 등 신설(제74조)
16	보험법	1995.04.06 채택 2005.09.13 수정보충(3차)	· 보험회사 영업허가증 주소등록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로 함(제56조) · '회사등록'을 '정해진 등록'으로 수정(제57조)
17	산림법	1992.02.04 채택 2005.08.02 수정보충(4차)	· 산림조성사업의 수립화, 원림화(제5조) · 나무품종 육종생산 신설(제14조) · 새품종나무 재배 신설(제38조)
18	상표법	1998.01.14 채택 2005.08.02 수정보충(2차)	· 상표등록신청문건의 접수정형 통보(제13조) · 위법행위시 영업활동 중지 신설(제47조)
19	손해보상법	2001.08.22 채택 2005.04.19 수정보충	· 과학기술적 발명자료 제3자에게 양도시 손해보상 신설(제37조)
20	식품위생법	1998.07.22 채택 2005.12.13 수정보충(2차)	· 검사, 검정 불합격 식료품의 판매금지(제13조)

연 번	법 률 명	수 정 보 충 일	주 요 ( 개 정 ) 내 용
21	세관법	1983.10.14 채택 2005.08.30 수정(6차)	· 가격미승인 물자 반출입 단속통제(제17조) · ‘외국투자기업’을 ‘일부 외국투자기업’으로 개칭(제35조)
22	전염병예방법	1997.11.05 채택 2005.12.13 수정보충(2차)	· ‘집짐승’을 ‘동물’로 수정(제10조)
23	지하자원법	1993.04.08 채택 2004.12.28 수정(2차)	· 광물자원의 폭파, 광천자원의 성분함량 변화 행위금지(제41조)
24	합작법	1992.10.05 채택 2004.11.30 수정보충(2차)	· ‘중앙무역지도기관’을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으로 수정(제7조 이하) · 합작기업 경영활동의 무관세 신설(제12조)
25	합영법	1984.09.08 채택 2004.11.30 수정보충(4차)	·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 승인을 ‘50일’에서 ‘15일’로 단축(제9조) · 합영기업 창설 승인기관으로 ‘도(직할시)인민위원회’로 단일화(제10조)
26	형법	1950.03.03 채택 2005.07.26 수정보충(8차)	· 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에 ‘고의적중상해죄’도 미적용 신설(제18조) · 특허권, 공업도안권, 원산지명권 침해자에 대한 처벌 신설(제113조)
27	형사소송법	1950.03.03 채택 2005.07.26 수정보충(9차)	· 형사소송관계자에 ‘피소자’도 포함(제9조) · 재심관련조항에서 ‘범죄’를 ‘사실’로 수정(제403조, 제409조)
28	해운법	1980.08.10 채택 2004.09.27 수정보충(2차)	· 강제판매된 선박은 국적미취득(제12조) · 선장의 대리행위 범위와 집임자의 책임규정 신설(제25조)
29	환경보호법	1986.04.09 채택 2005.04.19 수정보충(3차)	· 환경파괴현상에 오존층파괴, 지구온난화 신설(제9조) · 생물다양성의 보존에 위해행위 금지(제16조) · 농약을 비행기로 살포시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 신설(제31조)
30	외국인기업법	1992.10.05 채택 2005.05.17 수정보충(3차)	· ‘라선경제무역지대’ 삭제하고(제1조, 제6조), 외국인기업은 정해진 지역에 창설운영가능 신설(제6조) · 기업을 등록한 날이 외국인기업창설일 규정 삭제(제9조)

연 번	법 률 명	수 정 보 총 일	주 요 (개 정) 내 용
31	외국인투자법	1992.10.05 채택 2004.11.30 수정보충(2차)	· 외국인기업은 정해진 지역에 창설운영 가능 신설(제3조) · ‘중앙무역지도기관’을 ‘중앙경제협조관리기 관’으로 개칭(제16조)
32	외화관리법	1993.01.31 채택 2004.11.16 수정보충(3차)	· 국민의 외화 보유 한도 삭제(제15조)

편집: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 1. “북한에도 법이 있는가?”
- 2. 「사회주의 법무생활론」과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 3. 법전 발간
- 4. 미국의 두 여기자 사건
- 5. 개성공단 남측인원 장기 억류 사건
- 6. 북한의 법제 전망과 과제

1. “북한에도 법이 있는가?”

- 미국 「커런트 TV」소속의 두 여기자 ‘로라 링’과 ‘유나 리’가 2009년 3월 두만강 인근 북한-중국 접경지대에서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다가 북한 국경을 넘는 바람에 북한군에 체포돼 억류되면서 큰 파문이 일어났음. 그후 세계 언론의 주목 속에서 두 여기자는 지난 6월 북한 중앙재판소로부터 조선민족적대죄, 비법국 경출입죄 등의 혐의로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음.
- 국내외를 막론하고 상당한 수준의 지식인들조차 “북한에도 법이 있는가?”라고 묻는 경우가 간혹 있음. 평생에 걸쳐 통일문제와 북한헌법 등을 연구하고 특히 지난 93년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법연구회」를 결성해 나름대로는 꾸준히 연구활동을 해 온 필자로서는 참으로 당혹스러운 질문이 아닐 수 없음. 이러한 질문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 그만큼 잘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함.
- 따라서 여기에서는 북한의 법제 동향을 일별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함. 그런 다음 미국의 두 여기자 문제와 한국의 개성공단 근로자 장기억류 문제를 규범적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북한 법제의 향후 전망을 시도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자 함.

2. 「사회주의 법무생활론」과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 김일성이 1977년 12월 15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 회의시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라는 연설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기본내용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시방법 △관료주의와의 투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 법무생활’에 대하여 밝힌 이후, ‘사회주의 법무생활론’은 북한사회에서 법분야의 독특성을 나타내는 이론으로 되었음. ‘사회주의 법무생활’이란 “사회주의 사회에 사는 모든 사회성원들이 법규범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그 요구대로 활동하는 사회생활”이라고 함.

연번	법률명	수정보충일	주요(개정)내용
31	외국인투자법	1992.10.05 채택 2004.11.30 수정보충(2차)	· 외국인기업은 정해진 지역에 창설운영 가능 신설(제3조) · ‘중앙무역지도기관’을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으로 개칭(제16조)
32	외화관리법	1993.01.31 채택 2004.11.16 수정보충(3차)	· 국민의 외화 보유 한도 삭제(제15조)

편집: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